

대전고등법원 2020. 5. 7 선고 2019나1466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전고등법원 2020. 5. 7 선고 2019나14668 판결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. 8. 30 선고 2019가합10084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형욱

피고, 피항소인 1. F

2. G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

담당변호사 정진

변론 종결 2020. 3. 31.

판결 선고 2020. 5. 7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. 8. 30. 선고 2019가합100847 판결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1. 주위적으로,

가. 피고 F은,

1) 원고들에게 각 3,284,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27.부터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2) 원고 D에게 1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 G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4.부터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예비적으로,

가. 피고 F은,

1) 원고들에게 각 3,284,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27.부터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2) 원고 D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 F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8. 1. 1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다. 피고 G는 피고 F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8. 1. 23. 접수 제5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라. 피고 F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마.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156,478,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4.부터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, 17행의 "피고 2017년경 F이 수감되면서"를 "2017년경 피고 F이 수감되면서"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권혁중

판사정정미

판사이호재

별지